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6.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6. .

경 제 도 시 위 원 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발의자: 김기열 의원 등 8명(서민우, 고명숙, 장호섭, 박정환, 김장관, 정순옥, 박종길)
- 발의일자: 2023. 5. 26.
- 회부일자: 2023. 5. 26.
- 검토기간: 2023. 5. 26. ~ 5. 30.(5일간)

2. 제정이유

-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며,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입법의 불비 상황을 방지하여 올바른 식생활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제20조
- 예산조치: 비대상
- 입법예고(2023. 5. 26. ~ 6. 5.):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는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및 제20조제4항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추구하는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달서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
4.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 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홍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④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 · 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 · 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 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 · 군 · 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 군 · 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